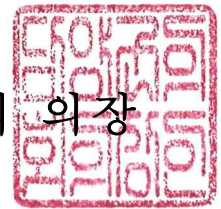


담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담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8. 25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 이유

- 담양군의회 의원의 역량 제고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연수 지원 제도를 정비하여 교육연수 지원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3. 주요 내용

- 가.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-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 제출 규정 신설

4. 입법 예고 기간 : 2026. 8. 25. ~ 8. 31.(6일간)

5. 의견 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

1. 조례안 | 담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관련조문

의견

2. 의견

3. 기 타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 소

(전화 :

성명

)

(서명 또는 인)

담양군의회 의장 귀하

담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교육연수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의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교육연수 지원 신청서(제6조 관련)

신 청 자	성 명	
	소속위원회	
	연 락 처	
신청내용	구 분	☐ 교육 ☐ 우수 사례 견학(비교 시찰)
	일시(기간)	
	참 석 자	
	장 소	
	주 요 내 용	
「담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담양군의 회 의원 교육연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: (서명 또는 날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(생략)	제6조(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교육연수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의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